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24일, 구자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구자근의원)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케이티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는바, 정보보호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침해기업이 자신의 예산을 어떠한 영역에 투자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기업에게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정보기술부문 투자금액 중에는 정보보호 투자금액 외에 기업의

운영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투자비용과 인건비 등의 고정지출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한정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다른 정보기술 분야 투자 축소에 따른 기업의 성장 정체, 고용 감축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